

2020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제주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제품 완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는 기한 내에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일
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사업 개요



- 사업명 : 2020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
- 모집기간 : 2020년 03월 10일(화) ~ 04월 17일(금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 - 사업수행기간 : 2020년 04월 ~ 20년 11월 30일
- 지원규모 : 과제별 컨소시엄(협력체계) 구성 15건 내외
 - 참여기업 :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기업
 - 수 행사 :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디자인전문회사
- 지원금액 : 과제당 1,000만원 이내
 -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보조금 90%, 참여기업 부담10%)
 - *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,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부담 원칙
- 신청방법 : 컨소시엄(협력체계:참여기업↔수행사)을 구성하여 지원과제 신청

지원 내용

○ 지원분야 및 내용 ※ 참여기업 1사당 1개 지원 과제 선택

참여기업			수행사 (디자인전문회사)	
지원과제	지원한도	기준분량	수행규모	수행내용
브랜드 디자인(BI,CI)	1,000만원	기본+응용 시스템 및 메뉴얼북	2개사 이내	브랜드 디자인(BI,CI), 제품 패키지 디자인 등
제품 패키지 디자인	1,000만원	제품 1종		
디자인 인큐베이팅(판매연계)*	1,000만원	1회(진흥원 유통망 테스트 판매)		

※ 디자인 목업 제작(출력·포장비)는 총 사업비의 15%이내

디자인 인큐베이팅이란?

판매유통과 연계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, 목표시장 진입을 위하여 관련 유통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향후 지속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○ 지원 진행 절차



○ 지원 항목 예시

지원 항목	기준 분량
브랜드 디자인 (BI, CI) 수정·보완	수정·보완 및 디자인 출원비 등
제품 패키지 디자인 수정·보완	수정·보완 및 디자인 출원비 등

○ 진흥원 판매유통 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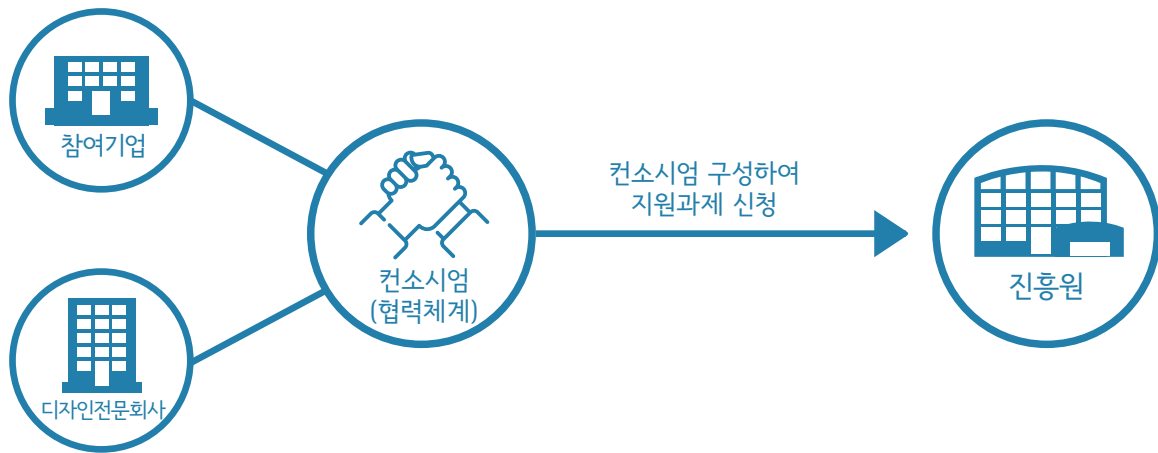
구 분	합 계	도내 판매장	도외 슝인슝	온라인·홈쇼핑
운영 채널수	32개소	2개소	8개소	22개소

※ 전체의 과정을 진흥원 유통관계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며, 판매가 가능한 채널은 위와 같음.

신청 형태

○ 컨소시엄(협력체계) 형태로 지원과제 신청

- 참여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협력하여 신청 및 참여 신청서,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



신청 자격

○ 컨소시엄(협력체계) 형태로 지원과제 신청

· 참여기업

- 공고일 현재 제주에서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-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 “제조업”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기업

· 디자인전문회사

- 공고일 현재 제주에서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둔 디자인 전문회사*
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디자인전문회사*
- * 시각, 포장, 멀티미디어, 서비스디자인, 제품디자인 분야에 신고(등록)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

※ 지원제외 대상

- 동일 사업 내용으로 '17~'19년도 제주자치도 및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디자인개발을 지원받은 업체 (참여기업만 해당)
- 접수 마감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업체
- 정부출연과제, 타기관 기지원과제는 선정 제외

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03. 10(화) ~ 04. 17(금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(wlsdl0717@jba.or.kr) 제출
- 제출서류
 - 참여 신청서는 스캐닝 후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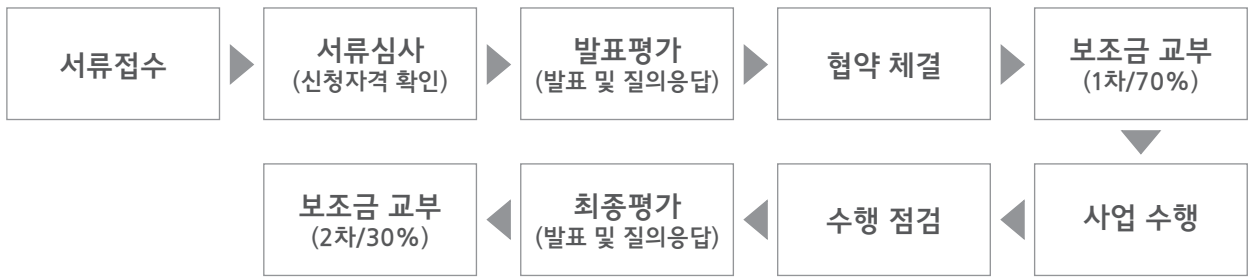
구분	서류명	참여기업	디자인전문회사
①	디자인 사업 참여 신청서	○	○
②	세부 사업계획서	○	○
③	제품 설명서	○	
④	가정 증명 서류 (각 2점, 최대 10점) (공동상표 제주마쌈, JQ, 제주화장품인증, 여성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장애인기업, 성장유망중소기업)	○	
⑤	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동의서	○	○
⑥	최근 3년간 매출실적증빙서류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	○	○
⑦	사업자등록증 사본	○	○
⑧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○	○
⑨	전문인력 보유현황		○
⑩	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		○
⑪	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		○
⑫	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○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- 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유통팀 064)805-3358

진행절차 및 평가

○ 진행 절차



○ 서류심사 : 도내 사업자, 업종·업태, 신청자격 제외사항 등 신청자격 확인

*신청자격 미충족, 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발표평가 : 발표 및 질의응답 '20년 4월 말 예정 (일정 별도 공지)

-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이내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
- 발표 심사 기본 5분 (±3분),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총괄 책임자가 발표 진행

○ 발표 과제 평가 기준

구분	배점	평가항목	평가지표
과제평가	15점	상품성	시장 경쟁력 및 마케팅 전략
	15점	사업 필요성	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
	15점	수행계획 평가	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
	20점	활용 전략	결과물 활용 전략 및 기대효과
	5점	기업 역량	브랜드·기업 매출 규모
	70점	소계	
수행평가	10점	기업 역량	디자인 수행 실적 등
	15점	디자인 수행 능력	개발물 실적 수준
	5점	사후관리 평가	사후관리 계획 등
	30점	소계	
합계	100점		

사업비 교부

- 보조금 교부 :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예치 확인 후 수행사에 지급
 - 1차 교부 : 협약 체결 후 70% 지급 (5월)
 - 2차 교부 : 최종 평가 후 30% 지급 (※평가 결과별 차등지급/11월)
 - ※ 참여기업에서 자부담금 예치 확인 후 수행사에 지급
 - ※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적발시 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향후 3년간 참여 제한

- 사업비 지급 절차
 - ① [기업부담금] 개발비의 10% 선금 지급(참여기업→수행사)
 - ② [보조금] 협약 후, 기업지원금의 70% 지급(진흥원→수행사)
 - ③ [부가가치세] 총 개발비의 10% 부가가치세 지급(참여기업→수행사)
 - ※ 총 사업비 = 개발비(보조금+기업부담금) + 부가가치세
 - ④ [보조금] 최종평가 후, 나머지 기업지원금 30%(진흥원→수행사)

사업 수행 점검

- 사업 수행 점검
 - 점검시기 : 2020년 7월 (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)
 - 점검방법 : 수행사 방문 점검
 - 점 검 반 : 경제통상진흥원 사업담당자 외
 - 점검내용 :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점검 (사업계획서 이행여부 등)
 - ※ 점검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

최종 평가

- 평가시기 : 2020년 10월
- 평가대상: 선정과제 전체
 - 최종평가위원회 : 관련 전문가 5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
 - ※ 심사위원 구성 시 선정평가위원회 명단을 우선순위로 구성
 - 프레젠테이션 소요시간 : 과제별 기본 5분 (±3분)

○ 최종 평가 기준

구 분	배 점	평가지표
개발 진행과정의 적합성	20점	· 목표 시장의 상황(타겟 소비자 및 경쟁사) 등 분석 적용 정도 · 예산 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
결과물의 타당성	30점	· 디자인 컨셉 및 개발 방향에 타당한 결과물(용도, 특성) · 디자인 창작성 발휘정도 (신규성, 유사성, 창조성, 용이성)
사후관리의 적합성	20점	· 산업재산권 취득 · 결과물 활용도(참여기업 및 제품 활용여부)
기대효과	30점	· 경제적 파급효과(매출 및 시장진입 효과 등) ·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· 매출 상승 등 참여기업의 성장 및 파급 효과
합 계	100점	

결과물 제출

- 제출 서류 : 디자인 개발 결과보고서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
 - ※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“실패” 평가로 간주 (지원금 환수, 잔여 지원금 지급중단, 과제참여 제한)
- 결과물의 범위 (분야별 공통 : 최종 결정된 디자인 시안)
 - 공통 사항 : 개발 종료 후 참여기업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요청하고 출원결과를 전달기관에게 보고 (출원사실증명원 사본 제출)
 - 브랜드 디자인 (BI,CI) : 메뉴얼북(Basic & Application System)
 - 시각, 포장 디자인 : 디자인 Mock-Up 또는 Working Mock-Up
 - 디자인 인큐베이팅 : 디자인 Mock-Up 또는 Working Mock-Up

사후조치

○ 등급별 차등조치

평가구분	평가등급	평가기준	사후조치내용 (본 사업에 한함)
성 공	SS등급	상위 1~3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0 제주 디자인 어워즈 수상 · 디자인 제품 직매입 유통 (진흥원 유통채널) · 차년도 지원사업 과제수행 +1개 추가수행 · 각종 진흥원 판매 채널 관련 디자인용역 우대선정 ·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	S등급	심사결과 평균 90점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디자인 제품 진흥원 유통채널 입점·출시 ·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평가 가점 1점 부여 · 각종 진흥원 판매 채널 관련 디자인용역 우대선정 ·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성실이행	A등급	심사결과 평균 80~89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평가 가점 1점 부여 · 각종 진흥원 판매 채널 관련 디자인용역 우대선정 ·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보 통	B등급	심사결과 평균 60~79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종 개발지원비 지급
불성실 & 실 패	C등급	심사결과 평균 59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사업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(참여기업 및 주관기관) · 최종 개발지원비의 50% 지급

보조사업 유의사항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안내 후)

- 교부신청서를 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) 제출합니다.
- 사업계획서를 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) 제출합니다.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.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합니다.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습니다.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판매유통팀 (☎064-805-337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 1]

발표평가 세부 평가항목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지표	배점
과제평가	상품성*	제품(브랜드)의 시장 경쟁력*	10
		제품(브랜드)의 마케팅 전략*	5
	사업 필요성	디자인 개발(개선) 필요성	10
		디자인 개발(개선) 시급성	5
	수행계획의 우수성	수행계획의 체계성, 구체성	5
		실현가능성	10
	활용 전략	개발 결과물의 활용 전략*	10
		기대효과	10
	참여기업 매출규모	참여기업 매출과 규모*	5
	소 계		
수행평가	수행 기업역량	서면평가(*.별첨2)	10
	디자인 수행 역량	디자인 개발물 실적 수준	10
		투입인력 전문성	5
	사후 관리	사후관리의 적정성	5
	소 계		
합 계			100점

* 가점 : JQ마크, 제주화장품인증, 공동상표제주마싹 제품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성장유망 중소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(각 1점, 최대 5점)

* 디자인 인큐베이팅 지원의 경우 상품성 및 활용전략은 유통 전문가가 서면평가 실시

[별첨 2]

수행기관 서면평가표

수행기관 명 :

구분	요소	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배점	
기업역량	경영성과	○ 기업의 경영성과 적정성 (기업매출규모)	- 매출액 3억 이상 (2.5)	2.5	
			- 매출액 2억 ~ 3억 미만 (2.0)		
	- 매출액 1억 ~ 2억 미만 (1.5)	2.5			
- 매출액 1억 미만 (1.0)					
			- 매출액 증가율 15%이상 (2.5)		
			- 매출액 증가율 10%이상 ~ 15%미만 (2.0)		
			- 매출액 증가율 7%이상 ~ 10%미만 (1.5)		
			- 신생기업 또는 7% 미만 (1.0)		
			*매출액 증가율 = (19매출액-'18매출액) / '18매출액 × 100		7.5
	지원역량	○ 전문인력 보유현황	- 10명 이상 보유 (1.0)	1	
			- 5명 ~ 10명 미만 (0.8)		
			- 3명 ~ 5명 미만 (0.6)		
			- 3명 미만 (0.4)		
			※ KODIA 디자이너경력관리 확인서 대체 가능		
	수행경험	○ 사업수행경력	- 3년 이상 (1.5)	1.5	
			- 1년 이상 ~ 3년 미만 (1.0)		
			- 1년 미만 (0.5)		
기타실적	주요실적	○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대상기간: '17.1.1~19.12.31. (단, 용역 완료일 기준) 증빙인정범위 ①용역이행실적증명서 ②계약서+세금계산서 ③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또는 협약서	- 10개 이상 (2.0)	2	2.5
			- 5개 ~ 10개 미만 (1.5)		
			- 2개 ~ 5개 미만 (1.0)		
			- 1개 (0.5)		
			- 0개 (0)		
		○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실적	- 2건 이상 (0.5)	0.5	
			- 1건 (0.3)		
			- 0개 (0.0)		
합 계				10	

2020년 월 일

확인자 : _____ (인)

[별첨 2-1]

(인큐베이팅 분야)평가 세부 평가항목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지표	배점
과제평가	상품성*	제품(브랜드)의 시장 경쟁력*	10
		제품(브랜드)의 마케팅 전략*	5
	사업 필요성	디자인 개발(개선) 필요성	-
		디자인 개발(개선) 시급성	-
	수행계획의 우수성	수행계획의 체계성, 구체성	-
		실현가능성	-
	활용 전략	개발 결과물의 활용 전략*	10
		기대효과	-
	참여기업 매출규모	참여기업 매출과 규모*	-
	소 계		

○ 디자인 인큐베이팅 서면평가 위원(평가자)

위원	관련분야	소속	비고
-	온라인	온라인 전문위원	
-	홈쇼핑	홈쇼핑 전문위원	
-	마트·백화점	대형마트 전문위원·MD	